

## 법규신설 및 개정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1029호(2010월 12월 17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를 완화하며,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

- (1) 시장·군수·구청장은 21층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고층 건축물 건축이 보편화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함
- (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21층이상 등으로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 (3)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되어 국민의 건축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안 제11조제4항)

- (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관광호텔이 여관·여인숙 등과 같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시설로 규정되어 관광호텔 확충이 곤란함
- (2) 광진홍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저해한 시설에서 제외함
- (3) 관광호텔 건축허가 규제 완화로 관광호텔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건축신고로 가능한한 증·개축 대상을 축소(안 제14조제1항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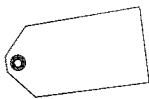
- (1) 층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 3층이상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 (2) 3층이상 기존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상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여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도록 함
-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 (3) 토지이용 규제의 절차가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 체계 구축(안 제30조제3항 신설)

- (1)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에너지 공급기관인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은 에너지 공급통계등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3) 66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초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보육시설에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 (1)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의로 용도변경 할 수 있어 허가권자가 구조·피난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음
  - (2)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도록 함
  - (3)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고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나. 기존 보육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시 건폐율 등 기준 완화

(안 제119조제1항다목)

- (1)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보육시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 (2)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 (3) 기존 보육시설의 비상대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들의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안 별표1제4호)

- (1)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가에 설치됨에 따라 주거환경 혼란 등 민원 발생
- (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함
- (3)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보호되고 고시원의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축신고 제출서류 보완(안 제12조제1항제1호)

- (1) 건축신고 제출서류는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도록 간

소화 되어 있어 이를 서류만으로는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 확인이 곤란하고 시공자가 적법한 시공이 어려워 건축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및 평면도 외에 단면도, 실내마감도, 시방서, 건축계획서, 입면도도 제출하도록 함
- (3) 건축물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적법 시공이 가능하여 그동안 간략한 도면 제출로 시공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법규신설 및 개정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정보 표시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표시가 없어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

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를 준용하도록 함

- (3)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경우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선의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4호(2010년 12월 23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고시

### 1. 개정이유

감리원 교체시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괄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의 복지 향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동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감리원의 경력 배점기준이 너무 높아 젊은 감리원 배치가 어려움

###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체시 겸증제도 도입 (안 제13조제5항 개정)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총수 1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총괄감리원의 경력 배점 단계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만점 경력기준도 1천세대 이상은 15년에서 12년으로, 1천세대 미만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

- 1) 감리업무 수행 시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감리원 교체가 수시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하에 감리원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겸증제도 도입 필요
- 2)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원 교체시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감리원 교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함

라. 감리원 교체빈도 완화 (안 부표 제2호가목·나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 나. 비평가대상 감리원 비실명제 도입 (안 부표 제2호가목 개정)
  - 1) 평가대상 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의 적격심사(PQ) 시 배치예정인 감리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자가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장기 보유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감리원 사기 저하
  - 2)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1) 감리업무 수행완료(사용승인 등) 이전에 감리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교체건수로 인정하고 교체빈도에 산정함으로써 감리자 및 감리원이 모두 교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개선 필요
- 2)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 건수, 빈도 산정 시 제외

- 다. 장기근속 감리원 우대 및 경력평가기준 완화 (안 부표 제2호나목 개정)
  - 1) 감리업무 장기수행자(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감리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감리자 지정시 총괄

###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2-2110-6228, 6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고시

### 1. 개정이유

감리원 교육시 현장여건에 맞춰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감리원 교육시 대체 감리원 확대 (안 제4조 개정)

- 1) 감리원 교육은 PQ가점획득을 위한 직무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PQ대상교육 외 또는 장기현장투입자의 경우 감리자의 확보인력 부족으로 교육기회 상실

-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시 교육기간 동안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배치하거나, 해당현장에서 동급 이상 유사직종 감리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2-2110-6228, 6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9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20조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 법규신설 및 개정

〈일괄 · 대안 · 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	〈현행〉	〈개정〉
특수교량		• 경간장 100m이상 (철도교량은 70m이상)
댐		•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 필요
공동주택 및 학교		• 초고층건축물만 가능
다중이용건축물	별도 규모기준 없음	•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막구조, 둘구조는 바닥면적 1만㎡이상)
공용청사		• 연면적 3만㎡이상
하수처리시설		• 처리용량 5만톤/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 처리용량 1만톤/일 이상의 폐수처리시설

[별표 1]

일괄 · 대안 · 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경간장 100m이상(철도교량은 70m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li> <li>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li> <li>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li> <li>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li> <li>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li> <li>철도(철도차량기지)</li> <li>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li> </ul>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항에 따른 초고층건축물만 해당)</li> <li>21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막구조, 둘구조는 바닥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li> <li>연면적 3만㎡이상인 공용청사</li> </ul>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 · 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li> <li>폐기물(쓰레기, 슬러지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li> <li>가스공급시설</li> <li>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li> </ul>

※ 기타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 참조.

[별표 2]

##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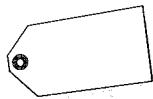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 · 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li> <li>·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li> <li>·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 · 불리 사항 비교)</li> <li>·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li> <li>·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li> <li>·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li> <li>·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 용이 정도</li> <li>·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li> </ul>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설비의 규모 · 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li> <li>·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li> <li>·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li> </ul>
3. 설계VE,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 필요성</li> <li>·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li> <li>· 적용가능한 신기술 · 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li> <li>·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li> </ul>
4. 상징성 · 예술성 ·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성 · 예술성 · 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li> <li>·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li> <li>·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li> </ul>

[별표 3]

##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li> <li>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li> <li>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li> <li>4)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li> </ul>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호(2010년 12월28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으로 통합·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06호, 2009.7.29.)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75호, 2009.8.24.)은 폐지한다.

제3조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4조 제3항 별표1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안전점검 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장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안전점검기관의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을 새로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규정하고,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며, 관련 고시 등을 통합·정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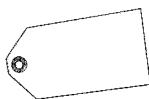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 2. 주요내용

- 가. 건설안전점검기관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 마련
-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 지침 등을 통합·개정
  - \* 안전점검관련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 나. 기타 :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서 확인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0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2.28)되어 '11년 1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의무관리대상인 신규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

\* 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등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여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 가능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별표 5 장기수선충 당계획에 반영

②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  
현재 인정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인정 및 인정기준 신설이 가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성능등급 인정이 가능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이 가능

\* 주택성능등급 제도 :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규정 제58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확인받을 것(규정 제60조의2)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